

의안 번호	제2759호
----------	--------

2026. 7. 27.(월) 11:00
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안 건
총 1건: : 붙임 참조 (일부개정안 1)



건설농정위원회

심 사 보 고 총 괄

I 심사대상 안건

- 의안번호 제2759호 :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II 심 사 경 과

의안번호	제 출 일	제 출 자 (발 의 자)	회 부 일	상 정 일 (제1차 건동위)
제2759호	2026. 7. 6.	장 성 군 수 (농 산 유 통 과 장)	2026. 7. 7.	2026. 7. 15.

III 심 사 결 과

안 건	심사결과
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수정가결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산유통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6. 7. 15.(제379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○ 제안이유

장성군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○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7조)
- 로컬푸드 인증(안 제18조)
- 인증의 취소(안 제2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·정비하여,
- 장성지역에서 생산·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임기, 로컬푸드 인증, 인증의 취소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임.
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, 현행 조례 조항 중 위원회의 “심의·의결” 기능과 회의 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 일부 “심의·의결”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기준이 불분명해 질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을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- 또한, 개정안에서 기존 제17조(시행규칙)를 삭제함에 따라 인증 신청절차·심사방법·표시방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보칙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

5. 토론요지 : 있음(회의록 참고)

6. 수정안의 요지

- 로컬푸드 육성·지원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 명확화
 - 안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“~ 심의하기 위하여” 를 “~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”로 수정
- 위원회 회의의 심의·의결 절차 명확화
 - 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“~ 찬성으로 심의한다” 를 “~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”로 수정

○ 시행규칙 위임 근거 신설

- 안 제6장 보칙 및 제25조(시행규칙)에 “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)를 신설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로컬푸드 육성·지원 위원회 설치 등) ① 로컬푸드 육성·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 위하여</u>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·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로컬푸드 육성·지원 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심의·의결하기 위</u> <u>하여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③ 위촉직 위원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위원회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제7조(회의) ① (생략)	제8조(<u>위원회</u>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<u>찬성</u> 으로 의결한다.	② ----- ----- --- <u>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장 보칙</u>
<u><신 설></u>	<u>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